

교원인사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 35 조의 2(의원면직의 제한) 제 35 조에도 불구하고,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제 1 호·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 79 조에 따른 파면·해임·강등·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(이하 "중징계"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</p> <p>1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</p> <p>2. 법인 정관 65 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</p> <p>3. 감사원·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</p> <p>4.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	<p>제 35 조의 2(의원면직 신청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) ① 총장은 교원이 제 35 조의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·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. 제 39 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</p> <p>2. 제 4 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</p> <p>②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확인 결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 79 조에 따른 파면·해임·강등·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(이하 "중징계"라 한다)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법인 정관 제 65 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총장은 법인 정관 제 51 조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제 2 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 1 호·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</p> <p>1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</p> <p>2.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</p> <p>3. 감사원·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</p> <p>4.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</p>	<p>사립학교법 제 61 조의 2</p>
<p>제 40 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 ① 징계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구분한다.</p> <p>② 정직은 1 월 이상 3 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월봉액의 3 분의 2 를 감한다.</p>	<p>제 40 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 ① (생략)</p> <p>② 정직은 1 월 이상 3 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.</p>	<p>사립학교법 제 61 조</p>